

# 職務發明 補償制度

株式會社○○○

## 職務發明規程

**第1條 (目的)** 本規程은 會社의 從業員이 勤務에 關해서 이룩한 發明考案에 依據 取得한 特許權, 實用新案機 및 意匠權(以下工業所有權이라 稱함)에 關한 事項을 規程함으로써 從事員으로하여금 職務發明에 對한 認識을 높여 發明考案의 保護, 獎勵 및 活用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.

**第2條 (定義)** ① 職務發明이라 함은 會社從業員이 그 職務에 關해 發明한 것이어야 하며, 性質上 會社의 業務範圍에 屬하고 그 發明行爲가 從業員의 任務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 自由發明이라 함은 前號의 規程에 의한 發明以外의 會社從業員이 한 發明을 말한다.

③ 發明者라함은 職務發明을 한 會社從業員을 말한다.

④ 會社從業員이라함은 社員, 工員 및 常勤屬託을 말한다.

**第3條 (資格)** ① 從業員은 누구나 本規程에 의한 職務發明을 할 수가 있으며 2人以上 共同으로 發明할 수도 있다.

② 從業員이 第3者와 共同으로 發明하였을 때는 그 持分만 承繼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.

**第4條 (權利의 歸屬)** 從業員이 職務發明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國內 및 外國에 있어서의 特許權, 實用新案權, 意匠權을 받을 權利를 會社에 讓渡하여야 한다

**第5條 (自由發明의 取扱)** 從業員이 職務發明 以外의 發明考案을 하여 處分할 경우에는 第3者에 優先해서

會社와 協議하여야 한다.

**第6條 (主管部署)** 職務發明의 主管部署는 다음과 같다.

1. 本社의 總務部 2. 事業場의 總務課

**第7條 (届出)** 從業員이 職務發明을 했을 때는 迅速히 그 發明의 內容을 自己가 所屬한 職務發明主管部署 또는 所屬部署長을 거쳐 提出하여야 한다.

**第8號 (職務發明審議委員會 設置構成)** ① 職務發明의 審議를 위해 職務發明審議委員會를 둔다.

② 職務發明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, 副委員長 1人, 委員 若干名을 둔다.

③ 委員長이 有故時 副委員長이 代行하고 副委員長이 有故時는 미리 定하여진 序列에 따라 先任委員이 代行한다.

**第9條 (審議)** 職務發明審議委員會는 다음事項을 審議한다.

① 當該發明의 特許權 및 職務發明의 與否

② 會社가 特許權을 承繼할 것인가의 與否 決定

③ 特許權獲得에 따른 評價 및 補償問題

④ 特許實施權 許與 및 共有問題

⑤ 職務發明規程의 改正 및 運營

⑥ 其他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

**第10條 (特許性的 審議基準)** 發明의 特許性 審議는 다음基準에 의한다.

① 產業에 利用될 수 있는 產業性

② 技術的 創作의 新規性

③ 技術內容의 進歩性

④ 不特許事由

**第11條 (意見聽取)** 職務發明을 審議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本人 또는 關係者를 會議에 出席시켜 意見を 聽取할 수가 있다.

**第12條 (報告)** 職務發明審議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을 主管部署를 통해 社長에게 報告하고 이를 特許出願部署에 回送하여야 한다.

**第13條 (出願)** 第9條 2項에 의해 會社가 特許를 받을 權利를 承繼하기로 決定하였을 때는 즉시 會社가 出願을 行하여야 한다.

**第14條 (發明者에 通知)** 職務發明主管部署에서는 委員會 審議結果를 迅速히 當該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.

**第15條 (特許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의 讓渡義務)** 發明者는 第9條 2項에 따라 當該發者의 發明에 대해 特許를 받을 權利를 會社가 承繼하기로 決定하였을 때는 그 權利를 會社에 讓渡하지 않으면 안된다.

**第16條 (特許權의 登錄)** 職務發明으로서 會社에서 承繼할 것으로 決定되었을 때는 會社는 遲滯없이 이를 會社名義로 特許登錄을 해야한다.

**第17條 (出願補償)** 第13條에 따라 當該發明에 대해 會社가 工業所有權을 出願했을 경우 會社는 當該發明(考案)을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의 出願補償금을 支給한다.

等級	區分	特許	實用新案	意匠
A		50,000	30,000	10,000
B		30,000	10,000	5,000
C		10,000	5,000	3,000

**第18條 (登錄補償)** 會社가 出願하여 特許公告 後 登錄 되었을 경우 會社는 즉시 當該發明(考案)을 한 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登錄補償금을 支給한다.

等級	區分	特許	實用新案	意匠
A		300,000	100,000	50,000
B		100,000	50,000	30,000
C		50,000	20,000	10,000

**第19條 (實績補償)** ① 會社는 登錄된 發明(考案)의 實施活用 狀況을 職務發明審議委員會에서 年2回(上·下半年)에 걸쳐 調査토록 한다.

② 會社는 前項의 調査結果 登錄된 發明(考案)의 實施效果가 會社經營實績에 顯著히 功獻하였다고 認定하였을 경우에는 當該發明(考案)者에게 實績補償금을 支給한다. 다만, 特許 3回, 實用新案 2回, 意匠 1회를 超過하지 못한다.

③ 前項에서 定하는 補償金額은 다음 5等級으로 나누고 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委員長이 이를 決定한다.

等級	1 級	2 級	3 級	4 級	5 級
金額	500,000	400,000	300,000	200,000	100,000

**第20條 (特許權의 處分補償金)** 第16條의 규정에 의거 會社所有로 登錄된 特許權을 讓渡實施 許與 또는 其他處分을 할 때에는 그 特許權의 內容 및 收入金 등을 參酌하여 當該發明者에게 다음 各號의 補償금을 支給하여야 한다.

1. 特許權의 實施를 有償으로 許與한 때에는 그 實施料 收入金の 5%以上~10%以下에 該當하는 金額
2. 特許權을 有償으로 讓渡한 때에는 그 代金の 5%以上~10%以下에 該當하는 金額
3. 職務發明을 會社 스스로가 實施하거나 또는 第3者에게 無償으로 實施를 許與한 때에는 第1號에 準하는 金額

**第21條 (補償金の 持分支給)** ① 第18條, 第19條, 第20條의 補償금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가 2人以上일 경우에는 그 持분에 따라 分割支給한다.

② 從業員이 第3者와 共同發明을 하였을 때에는 그 持분에 대한 補償金만을 支給한다.

**第22條 (退職 및 死亡後의 補償)** ① 發明者가 轉職 또는 退職한 경우에는 第19條, 第20條 및 第21條의 規程에 의한 補償金の 2분의 1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.

② 發明者가 死亡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補償금을 相續人에게 支給한다.

**第23條 (補償金の 不返還)**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補償금은 그 特許가 無効된 경우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. 다만 特許가 冒認에 의하여 無効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第24條 (異議申請)** 發明者는 第9條 2項의 決定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發明主管部署에 異議申請할 수 있다.

**第25條 (秘密의 保持)** 發明者 또는 職務發明에 관계하는 從事者는 發明의 內容, 기타 發明者 및 會社의 利害關係가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必要한 期間 중 그 秘密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.

**第26條 (發明者의 義務)** 發明者는 그가 한 職務發明의 處分 또는 實施許與를 받은자가 필요로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이에 協力한 義務가 있다.

**第27條 (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관한 準用)** 이 規程은 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도 準用한다.

**第28條 (外國出願의 取扱)** 本規程은 外國의 工業所有權을 對象으로 하는 發明에 대하여서도 이를 準用한다.

**第29條** 本規程은 197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.